

<법 부칙 제12조>

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,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.

6.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**1) 배 경**

기초자치단체인 시·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.4%(시 50.6%, 군 22%)로서 취약하므로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,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도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2003년까지 유해성분 허용기준 강화 및 세금인상 등 담배규제국제협약(FCTC)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sin tax로서 담배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을 소폭 인상조정하게 되었다.

담배소비세율의 인상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약 2,200억원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우리 나라의 담배가격 중 조세비중은 외국¹²⁾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부담비중이 71%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의 79.7%, 프랑스의 78.5%, 이탈리아의 76.6%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3조제1항제5호,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,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의3호,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, 관세법 제26조의2제1항 등이다.

12) 외국과의 담배가격 및 세부담을 비교

- 담배가격(US \$기준) 수준 : 한국 0.92, 일본 1.74, 미국 1.89, 영국 4.28, 프랑스 2.8 이태리 1.7,
- 세부담율 : 한국 67.7%, 영국 79.7, 프랑스 78.5, 이태리 76.6